학생연구워 지원규정

제정 2021. 3. 15. 개정 2022. 8. 3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처우, 인권 및 권익보호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(이하 '과기연'이라 함)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학생연구원"이라 함은 연구원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과기연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·석사·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재학생을 의미하며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.
 - 가.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 - 나. 수료생 중 소속대학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
 - 다.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·석사·박사 과정 중에 있는 자
- 2. "연수책임자"라 함은 과기연에서 학생연구원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과기연의 의무) 과기연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- 1. 학생연구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
- 2.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학생인건비 수입ㆍ지출ㆍ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5.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, 상해·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
- 6. 학생인건비 유용(미지급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 〈개정 2022. 8. 31.〉
- 7.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연수책임자의 의무)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- 1.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
- 2.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
- 3.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지급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

제5조(학생연구원의 의무)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- 1. 연수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
- 2.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특이사항은 연수책임자에게 보고
- 3.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전 연수책임자 및 학생연구원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
- 4. 인사 및 복무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과기연의 규정을 준수하고, 규정 및 근로계약 위반 시 책임부담 <개정 2022. 8. 31.>
- 제6조(연구환경 조성) 과기연은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, 졸업요건,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8. 31.>

제2장 학생연구원의 학업 · 연구 활동 보장

- 제7조(연간 활용계획 수립)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,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수책임자는 전년도 활용 인원,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및 변경) ① 원장과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별표 제1호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·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8. 31.〉
 - 1. 연구 주제 및 분야, 연구수행내용,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야 한다.
 - 2. 참여기간,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3.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.
- ② 원장과 연수책임자 및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조 제1항의 연구참여확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8. 31.>
 - 1. 연수책임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과제의 협약체결, 변경, 중단, 해약 등으로 연구참여 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- 2. 학생연구원의 학적변동, 개인사정 등으로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- 3. 학생연구원이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연구참여확약서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③ 본 연구참여확약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생연구원 및 연수책임자가 서명하고, 학생연구원을 관리하는 부서(이하 "담당부서"라 한다.)가 접수하는 것으로 체결을 갈음한다.
- 제9조(업무범위 제한)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학생연구원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·외 기여, 봉사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. <개정 2022. 8. 31.>
- 제10조(학업·연구권 보장)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부당업무 거부권 보장)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수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8. 31.>

제3장 학생연구원의 처우

- **제12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** 학생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 기준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2. 8. 31.>
- 제13조(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) ① 과기연은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, 학생인건비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, 연구 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·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·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)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

제 참여내역,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
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

- 제15조(통합관리계정 설정) 과기연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수책임자 단위로 설정 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학생인건비 지급) ① 과기연은 연구참여확약서 및 연수허가신청서 또는 근로계약서 의 내용을 근거로 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 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. 〈개정 2022. 8. 31.〉
- ②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17조(학생인건비 관리) 과기연은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,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·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자체점검) 과기연은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자체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8. 31.〉

제5장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호

- 제19조(인격권 보장) 연수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.
- 제20조(건강과 휴식 보장)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안전 보장) 과기연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, 학생연구원의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8. 31.〉
- 제22조(학생인건비 유용금지)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

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과기연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재정운영 정보 공개)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과기연 또는 연수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기연 또는 연수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22. 8. 31.〉
- 제24조(고충·상담 창구운영) 과기연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,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·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, 과기연이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, 비공개 원칙이 보장 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처벌·제재) ① 학생연구원은 연수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수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연수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학생연구원 관리부서, 감사부서 등 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과기연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지도교수 변경,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26조(준용규정) 학생연구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기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 (2021. 3. 1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22. 8. 3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학생연구원 연구참여확약서

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 약서를 체결한다.

1. 학생연구원 인적사항

성 명		학 번		생년월일	
소 속 (학과명)		과정 및 학기	() 과정 () 학기
과학기술인번호					
주 소					
연락처	(휴대전화번호)		(E-mail)		

2. 연구참여정보

가. 연구참여기간 : 20 . . . ~ 20 . . .

나. 담당업무(역할):

※ 연구주제 및 연구수행내용,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

다. 계정단위 학생인건비 총지급액 및 지급률

계 정	계정책임자	지급총액	지급개월수	*월평균지급률
			연구참여기간과동일	

*월평균지급률 = 월평균지급액(지급총액/지급개월수)/기준금액

라. 학생인건비 지급일 : 매월 21 일

마. 지급방법 :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1인 1계좌)

※ 참여중단·종료 시 중단·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(월 등)수에 대해 일할(월할 등) 계산하여 지급함.

바. 계정책임자

성 명			
소 속 (학과명)		직 급	
연락처	(연구실)	(E-mail)	

3. 기타 확약사항

- 가.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다.
- 나.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,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,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.
- 다.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.
- 라. 연수책임자는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고, 상해·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·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마. 연수책임자는 인권, 양성평등,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·폭행·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.
- 바.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(학생인건비 부당회수)하지 않는다.
- 사. 학생연구원은 연수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.
- 아.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,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이 발생시 연수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자.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차. 연수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하며,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지급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20 년 월 일

학생연구워 : (서명 또는 인)

연수책임자/계정책임자 : (서명 또는 인)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: (서명 또는 인)